대신대학교 실험·실습실 및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대신대학교(이하 "본교"라 한다) 내 실험·실습실 및 연구실에서 실험·실습과 연구 활동을 수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예방과 교내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본교의 실험·실습 및 연구활동을 위한 학부, 대학원, 부설연구소 및 부속 기관에 종사하는 교수, 직원, 학부생, 대학원생 및 기타근무자에게 적용 한다.

제3조(정의) 이 규정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1. 실험·실습 및 연구라 함은 본교의 교과과정에 의한 실험·실습 및 연구활동과 교육활동을 말한다.
- 2. 실험·실습실 및 연구실은 교육에 따른 기자재를 갖추고 교수, 직원, 학부생, 대학원생 및 기타근 무자가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교육시설(음악실습실 포함)을 말한다.

4조(업무분장) ① 실험·실습실 및 연구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총무처를 주관부서로 한다.

- ② 총무처에서는 기자재의 구매 및 현황과리 재물조사등 실험·실습실 및 연구실의 제반관리 업무를 총괄한다.
- ③ 안전관리책임자를 정, 부 2인을 둔다. "정"은 해당 실험·실습실 및 연구실의 학과(부)장이 되며, "부"는 담당교수 또는 학과(부) 행정조교가 된다.
- ④ 안전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.
- 1. 실험·실습실 및 연구실의 청결유지와 안전사고 예방
- 2. 기자재 점검
- 3. 기자재 선정 및 확보 계획
- 4. 기타 실험·실습실 및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제반 업무

제5조(세칙) 실험·실습실 및 연구실 관리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